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200064**  
신청인: (주)이에프엠네트웍스  
피신청인 : **Admin**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주)이에프엠네트웍스

경기도 용인 기흥구 보정동 1802-1 벤틀스타 2빌딩 6층

대리인 : 특허법인 무한(변리사 정명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1-8 명림빌딩 5층 특허법인 무한

피신청인: Admin

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408-201

분쟁 도메인이름은 “iptime.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오늘과 내일(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  
디지털타워빌란트 13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2.2.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2.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2.2.3.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2.2.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2.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2.2.3.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2.23.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2.23.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통지를 2012.2.24.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2.2.27. 센터는 김종윤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2.28.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2.28.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무선인터넷 중계기, 유무선 공유기, 라우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회사이다. 신청인은 그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 2002년경 이후 지금까지 “ipTIME” 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상표의 보호를 위해 한국에서는 2002. 6. 19. 상표출원을 하여 2003. 10. 27. 등록 제0563767호로 등록을 받았다. 해외에는 국제상표등록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및 인도네시아에도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 외, 인도 및 브라질에 상표출원을 하여 현재 출원 계류 중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2007. 11. 26. 등록받았다. 피신청인은 2011. 12.경 이전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청인의 상품들과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인 무선라우터, 무선인터넷, 무선네트웍스 등에 관한 검색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청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수요자들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가 신청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 2011. 12. 10. 당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11. 12. 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접촉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구입을 시도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제시한 금액이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을 거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은 “ipTIME” 상표를 그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들인 중계기, 유무선 공유기, 라우터 등에 대해 2002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상표의 보호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에 상표등록을 받아 두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볼 때, 신청인은 “ipTIME” 이란 상표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 “ipTIME” 을 대비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 “iptime.com” 에서 gTLD를 나타내는 확장자인 “.com”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iptime” 은 신청인의 상표와 글자의 구성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에 있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왔다는 점과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거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의 “ipTIME” 상표는 2002년경부터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점, 이 상표의 상품은 국내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연속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를 단순히 신청인 상품과 관련된 검색정보제공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판매될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되었다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협상과정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인 <iptime.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김종윤  
1인 조정부

결정일: 2012년 3월 26일